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2. 1.



김화덕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-

# 제안 설명서

설명자: 김화덕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먼저,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발생하는 차별을 예방하여,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,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, 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,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과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
##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월 25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.

##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 
(김화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00822007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2. 1. 25.

발의자: 김화덕, 박정환, 박왕규,  
안대국, 윤권근, 배지훈,  
정창근, 홍복조

## 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발생하는 차별을 예방하여,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(안 제3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- 라.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(안 제6조)
- 마.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(안 제7조)

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
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제25조
- 나.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, 원활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의사소통장애인”이란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.
3. “보완대체의사소통”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·대체하는 그림,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.

제3조(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)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

및 정도,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, 이를 위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에 관한 홍보와 장애인에 대한 달서구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의사소통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 사업)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
2.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
3.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사업
4.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홍보 및 인식개선) 구청장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장애인복지법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~④ <생략>

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·「초·중등교육법」·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·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(이하 “인식개선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~⑪<생략>

## 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23조(정보접근·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·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·제작·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, 구화,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,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,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 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